

한국 의류산업의 의장(디자인) 등록 추세와 의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의복류(의장분류 B1)의 의장 등록을 중심으로 -

김 용 주

한성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The Analysis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Korean Apparel Industry - Design Rights Registered in Apparel (Classification B1) -

Yong-Ju Kim

Dept.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3. 11. 6 투고)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o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The research data was total 1,850 design rights in apparel that have been registered to the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rom the first design registered in March 1, 1963 through those registered in April 24, 2003. All design rights were analyzed by the year, by the type of product, and by the type of applicant. And also design rights registered under the revised design registration system(without examination) were analyzed by the trai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weater & polo shirts, underpants, and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were three major single categories registered in apparel: (2) 54.3% of total design rights in apparel was registered since the legal system of design rights has been revised in March 1, 1998: (3) Registration by individual applicant were 71.7% of total: (4) About 60% of total design rights were for aesthetic, but in some categories such as vest, brassiere, undershirts, designs for function were more frequently registered than others. And total 68 design rights for the symbol of the organization or uniform, were registered in upper outerwear and pants: (5) A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protection system for designs, the term of "design"(expressed in Korean), double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s, malicious intention to register other's trademark as his/her own design.

Corresponding author: Yong-Ju Kim, E-mail: yjkim@hansung.ac.kr

본 연구는 2003학년도 한성대학교 아트앤디자인커뮤니케이션센터 특별연구비로 수행되었음.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design rights were more used for the product that has relatively long life cycle. And the revised law has been effective in encouraging the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However, the current design law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revised to prevent design rights or trademark infringement.

Key words: design rights(의장권), design right infringement (의장권침해), trademark infringement(상표권침해)

I. 서론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요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디자인이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²⁾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산업전반의 기술수준이 평균화되고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디자인과 같은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통상산업부의 업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자동차업체는 60~90%, 전자업체는 70~80%, 의류는 80%, 속옷은 90~100%, 문구업체는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³⁾ 그런데 모순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 증대는 디자인 모방의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⁴⁾ 그러므로 세계의 여러 나라는 디자인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개발된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디자인을 도용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⁵⁾ 세계경제 환경에서도 디자인라운드는 기술라운드, 환경라운드 못지 않은 새로운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세나 비관세의 무역장벽이 폐지되는 대신 상표나 의장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⁶⁾

패션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기능보다는 디자인이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업계에는 오랜 관행으로 디자인의 모방이 '카피캣(copycat)' 또는

'샘플 따먹기'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위조상품의 경험이 많은 국내 패션업계에 대한 김용주의 조사연구⁷⁾에 따르면 패션기업은 상표 도용뿐 아니라 디자인도용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표와 비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디자인도용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디자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기업은 디자인의 유출 및 모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추세이다.⁸⁾ 예를 들면 '히딩크넥타이'의 디자이너는 의장출원 제품의 모방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러한 법적 공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⁹⁾

정부의 차원에서 기업의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제안된 것이 의장제도이다. 현행 의장법은 디자인의 개념 중 제품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의장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패션기업은 선출원에 의해 자사의 창작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무단 도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의복류에는 1963년 3월 19일 박복자에 의해 출원된 위생팬츠¹⁰⁾를 시작으로 2003년 4월 30일 현재까지 2,468건이 출원되어 있다.¹¹⁾ 이는 총 의장등록 363,221건에 비하면 약 0.7%에 불과하지만 의복류에 대한 무심사등록 제도가 실시된 1998년 3월 1일 이후의 건수를 비교하면 의복류의 비중이 1.1%로 증가하여 점차 의류기업의 의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도의 이용률은 낮은 게 현실이다.¹²⁾

본 연구에서는 의복류의 의장등록 현황 및 그 추이를 분석하여 의류기업의 의장제도의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복류의 의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의장법은 1998년 의복류에 대한 무심사등록 출원제도를 실시하고, 2001년 개정의장법에서는 부분의장제도,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그리고 비밀의장제도를 두어 의류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왔다.¹³⁾ 그러나 아직 의류기업의 인식은 디자인도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의장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보호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⁴⁾ 디자인 또는 의장의 보호는 의류 또는 패션기업의 브랜드관리를 위한 분야이며 의장제도는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류학에서는 의장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다. 의장제도가 의류 또는 패션기업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류 또는 패션산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 정립을 위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법을 정비하는 부서에서는 그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문제점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의복류(의장분류 B1)의 의장 등록 현황 및 추이를 출원연도, 출원인, 세부품목, 그리고 의장의 속성별로 분석하여 그 추세 및 의장등록의 동기를 파악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복류에 대한 의장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의 의장제도 개정에 있어 좀 더 기업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자인(design)과 의장(意匠)

의류기업은 매 시즌 수 백 가지의 신상품을 디자인하여 제품개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의류제품의 '디자인'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권리가 보호된다. 그러므로 우선 두 가지 용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design)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라고 정의되어 있다.¹⁵⁾ 이때의 조형요소란 선, 면, 색, 입체, 그리고 윤곽의 전체적인 효과로 형(form)과 형상(shape), 외형(configuration) 혹은 장식(ornament)의 외관에 관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의장(意匠)에 관하여는 의장법 제 2조 1호에서 정의하기를 "물품의 형상(shape, form), 모양(pattern), 색채(color)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디자인과 의장은 모두 형태로서 나타나는 존재형식과 외적인식을 가지고 파악되는 모양인 점에서 동일하고 또 어원적으로도 의장은 영어의 design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법상 보호 대상으로서의 의장은 디자인을 '법적으로 관념화한 것', 즉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 구체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⁶⁾ 그런데 현재 의장법의 '의장'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이 법제정시 영국 의장법상의 '디자인(design)'을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¹⁷⁾ 외국 의장법의 경우 영국의 의장법과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디자인(design)으로, 프랑스는 '디자인(dessin) 및 모형(model)'이라는 용어로, 독일은 '도안 및 모형(muster und mod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인 파리협약과 WTO/TRIPs협정에서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글로벌경쟁환경을 고려해볼 때 의장이라는 실제적으로 산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 표현보다는 디자인이라는 영어의 사용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용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3년 7월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국회에 상정중이다.¹⁸⁾

2. 의장의 조건과 의장등록 요건

현행 의장법이 규정한 의장의 조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그리고 심미성이 있어야 한다.¹⁹⁾ 우선 의장이 되려면 새로이 창작된 도안의 모티브가 물품에 적용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이 다르면 의장도 별개의 의장이 되는 것이다.²⁰⁾

둘째 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예를 들면 1998년 (주)질경이우리옷은 '배흘림깃 줄저고리'를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에서 볼 수 있는 배흘림기둥의 미적원리를 목부분의 옷깃과 앞섶에 적용하였고 이 형태를 의장등록하였는데 (주)쌍방울의 예나지나에서 도용했다며 의장권침해 금지처분신청을 하였다²¹⁾. 셋째, 의장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허청이 규정한 의장의 등록요건은 위의 의장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및 선출원주의 요건 등을 또한 충족하여야 한다.²²⁾

첫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 순수 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등은 양산성이 없으므로 의장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신규성이란 그 의장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일 미처 의장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시장에 소개되어 의장이 신규성을 상실하였을지라도, 그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준다.

셋째, 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2건 이상이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다.

또 그 외 위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라도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은 공익적인 요청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3. 의복류의 의장제도

1) 의복류의 무심사등록제도

의복류의 의장출원은 199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의장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심사등록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유는 통상 출원으로부터 권리설정등록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나 통계적으로 보면 의장모방발생율(意匠模倣發生率)은 제품 발표로부터 1년 이내에 전체의 반수에 이르고 있고 출원으로부터 보면 1년 6개월 이내에 반수 이상이 모방되고 있다고 한다.²⁴⁾ 그러므로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디자인 개발 속도가 빠른 의복류나 섬유디자인과 같은 제품의 경우 권리발생의 지연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의장은 상대적으로 신규성과 창작성이 미약하므로 형식적 요건만을 간단히 심사해 조기에 등록시켜 주고 또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무심사라 함은 의장등록에 필요한 실체요건 즉, 의장법 제 5조(의장등록의 요건:신규성, 창작성), 제 6조(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1호 및 3호, 제 7조(유사의의장), 제 11조 1항(1의의장 1의의장등록출원), 제 12조(한별물품의 의장), 제 16조(선원) 1항 및 2항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지 방식이나 도면의 하자, 공서양속 위배여부만을 심사하므로 출원신청후 등록까지 약 3개월정도만 소요되어 일반 의장등록에 비해 5배정도 기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무심사제도에서도 출원시 심사를 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도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의장등록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등록원부에 등록하

도록 되어있다(그림 1).

그런데 의류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된 무심사등록제도가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부실권리의 양산이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⁵⁾ 무심사등록제도 이전 직물디자인 등에 대한 거절사정비율은 93년 81%, 94년 23%, 95년 31%이었는데 무심사등록제도 이후 이러한 디자인도 모두 의장권을 취득하게 된다.²⁶⁾ 그러므로 무심사된 등록의장에 대해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는 무효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하며 이런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게된다. 그리고 설사 승소한다해도 이미 피해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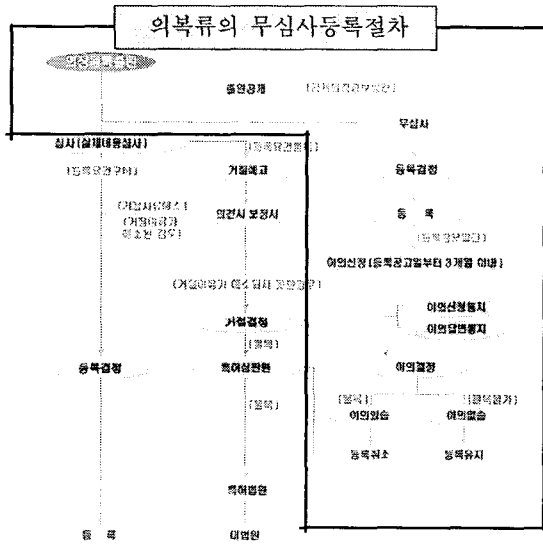
또다른 문제는 의장 무심사등록 후 이의 신청제도가 어느 정도 부실권리의 존속을 저지할 수 있는나이다. 이것은 의장등록공보의 열람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상정²⁷⁾의 조사에 의하면 특허청발간 의장공보를 참고하는 디자이너는 62명중 4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느 정도 부실권리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다의장제도

의류제품은 매 시즌 동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약간의 라인이나 디테일의 변형으로 수십, 수백개의 유사한 형태가 디자인된다. 직물디자인 분야에서도 한 시즌을 위하여 수 십개의 의장이 창작되고 이중 2-3개의 의장이 성공함으로써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특징이 있다. 의장법에서는 이러한 의류 또는 직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의장제도를 설치하였다. 다의장제도란 다출원의 비용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처리절차 간소화하여 의장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격려하고 있다. 다의장 등록시 추가등록료는 개별의장의 경우 기본 등록료가 최초 3년 75,000원인데 비해 60,000원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실제로 다의장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3) 비밀의장제도

의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기 전에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유보하는 제도이다. 의장등록출원인이 의장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의장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²⁸⁾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1963년 3월 1일 최초 의복류 의장등록 이후 2003년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의복류(의장 대분류 B1, 소분류 B100-B190, 부속품제외)의 의장으로 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산업재산권정보검색(KIPR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1,850건을 표본 추출없이 모두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의복류의 의장 등록 절차
출처: 특허청 (2003). 지적재산권 제도해설

2. 자료분석

수집된 총 1,850건의 의장은 1차적으로 소분류 품목별로 연도별 출원건수 및 출원인 유형(개인, 기업)별로 분석하였다. 2차 분석으로는 의복류의 의장 무심사등록 출원제도가 실시된 1998년 3월 1일부터 2003년 4월 24일까지 등록된 1,006건에 대하여 의장의 소분류 품목별 창작의 주요속성을 분석하였다. 출원의장은 기본필수 요건으로 심미성을 갖추는 디자인이어야 하나 의장출원의 주된 동기가 미적 특성(주로 surface design)을 위한 의장인 경우와 입체적인 구성변형에 의한 기능성을 부여함을 위한 것, 그리고 공공기관의 표장이나 기업 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유니폼을 위한 의장으로 분석하였다. 속성의 평가는 본 연구자와 의상전공자 1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불일치 의장에 대하여는 다시 토론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자료와 현행 의복류에 대한 의장제도를 토대로 의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토의

1. 품목별 출원추이

의복류의 소분류 품목별 의장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장출원은 일부 세부 품목에 집중적으로 출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우선 단일 품목류로 가장 많은 의장 출원이 된 품목은 B1113인 스웨터, 폴로셔츠 등으로 총 출원건수의 12.2%인 225건이 출원되었고 두 번째는 언더팬츠(B166)에 11.8%, 세 번째는 바지류(B1121)에 총 170건인 9.2%의 의장이 출원되어 있었다. 또 생활한복류인 B110-1과 전통한복인 B110A에 총 181건인 10.8%의 의장이 출원되어 있었고 잠바 등(B1115)에 121건이 출원되었다. 이들 품목은 캐주얼 의류 또는 한복류, 그리고 속옷으로 다른 품목류에 비해 상품수명이 긴 제품으로 의장등록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보호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제품류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복류와 속옷류는 전체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다른 품목보다 더 많은 의장이 출원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최근 패션 속옷 등의 등장으로 속옷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복류 또한 예복으로 사용됨에 따라 제품의 부가가치가 큰 상품으로 인식되어 디자인을 보호할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출원인 유형에 따른 등록 의장분석

출원인 유형을 개인출원과 기업출원으로 나누어 품목별 분석한 결과<표 1> 대체적으로 개인 출원의 비중이 71.7%로 기업에 비해 개인이 의장제도를 더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었고, 기업의 유형도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아디다스와 같이 대기업이 23건을 의복류에 의장출원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우의/예복(B100), 전통한복(B110A), 와이셔츠 등(B1112), 스웨터/폴로셔츠류(B1113), 앞치마(B131), 브래지어(B161), 언더팬츠(B166), 스타킹(B167)의 품목들은 출원건수가 50건수 이상으로 많으며 개인출원의 비중이 72%이상인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코트, 교복 등의 외의 상의(B1110), 신사복 자켓(B1111), 양복조끼(B1114), 잠바 등(B1115), 스커트(B1122), 수영복(B15), 코르셋(B165), 기저귀(B180)는 출원건수도 비교적 많으며 기업출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또는 기업의 출원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마케팅력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창작자가 의장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⁹⁾

3. 의복류 품목별 연도에 따른 출원추이

출원연도를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그 이후 현재(2003.4.24)까지로 구분하여 품목별 추이를 분석하였다(표2). 분석결과 1980년까지 약 13년간 총 9.3%의 의장이 출원된데 반해 1980년 이후 1990년까지는 16.4%, 1991년부터 2000년까지 43.3%, 그리고 지난 2년 4개월간 총 의장출원의 30.9%이루어져 의복류의 의장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표 1> 의복류 품목별 출원추이 및 출원인비교

분류 코드	설 명	출원건수 (품목별비중,%)	출원인 유형	
			기업출원(%)	개인출원 (%)
B100	기타 의복 (우의, 예복)	76 (4)	18 (24)	58 (76)
B101	보온의 (방한복)	4 (0.1)	2 (50)	2 (50)
B110-1	양복 및 한복	17 (0.9)	9 (52)	8 (48)
B110A	한복	164 (8.9)	13 (7)	151 (93)
B1110	외의 또는 상의 (코트, 교복, 원피스, 드레스, 모피코트)	75 (4)	29 (38)	46 (62)
B1111	신사복 등(신사복, 재킷, 상의, 교복상의)	54 (2.9)	37 (68)	17 (32)
B1112	와이셔츠 등(와이셔츠, 블라우스, 셔츠)	69 (3.8)	20 (28)	49 (72)
B1113	스웨터 풀로셔츠 등(스웨터, 풀로셔츠, 티셔츠, 운동용상의, 작업용상의)	225 (12.2)	58 (25)	167 (75)
B1114	양복조끼 (작업용조끼, 보온조끼)	62 (3.4)	27 (43)	35 (57)
B1115	잠바 등(자켓, 운동상의, 작업자켓)	121 (6.6)	57 (47)	64 (53)
B1116	망토(망포, 쇼울)	15 (0.8)	10 (66)	5 (34)
B1121	바지(청바지, 승마바지, 폼프바지)	170 (9.2)	43 (25)	127 (75)
B1122	스커트	55 (2.9)	25 (45)	30 (55)
OB113	연결복(작업복)	9 (0.4)	3 (33)	6 (67)
B121	일본/중국옷	2 (0.1)	0 (0)	2 (100)
B130	유아용티백이	16 (0.8)	0 (0)	16 (100)
B131	앞치마	41 (2.3)	7 (17)	34 (83)
B141	잠옷	10 (0.5)	0 (0)	10 (100)
B142	포대기	37 (2)	2 (5)	35 (95)
B15	수영복	38 (2.1)	18 (47)	20 (53)
B161	브래지어	62 (3.4)	14 (22)	48 (78)
B162	언더셔츠	40 (2.2)	10 (25)	30 (75)
OB163	슬립	7 (0.3)	0 (0)	7 (100)
B164	패티코트 등 (요대)	2 (0.1)	0 (0)	2 (100)
B165	코르셋등 (팬티형)	75 (4)	29 (38)	46 (62)
B166	팬츠 (언더팬츠)	217 (11.8)	45 (20)	172 (80)
B167	스타킹	79 (4.3)	12 (15)	67 (85)
B170	생리대	16 (0.8)	0 (0)	16 (100)
B180	기저귀	50 (2.8)	25 (50)	25 (50)
B181	기저귀카바	12 (0.6)	4 (33)	8 (67)
B190	옷카바	30 (1.8)	6 (20)	24 (80)
	계	1,850 (100)	523 (28.3)	1,327 (71.7)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공보(1963-2003.4.)

있다. 이는 의류기업 또는 개인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의장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품목별 출원연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최근 몇 년 간 급속히 출원이 증가한 품목과 그 이전에 꾸준히 출원이 이루어진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1991년 이후의 평균출원비중인 74.2%보다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품목은 한복(B110A), 신사복(B1111), 브래지어(B161), 언더셔츠(B162), 코르셋(B165), 언더팬츠(B166), 그리고 기저귀카바(B181)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부 품목들, 예를 들면 외의 또는 상의류(B1110), 와이셔츠 등(B1112), 잠바 등(B1115), 스커트(B1122), 연결복(B113), 포대기(B142), 스타킹(B167), 그리고 생리대(B170)등은 1990년도 이전에도 꾸준히 의장출원이 이루어진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4. 의복류 무심사제도 시행이후의 의장제도 활용

1998년 3월 1일 개정된 의장법에서는 의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복류 의장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표 2> 품목별 연도에 따른 의복류 의장등록추이

분류 코드	설명	총 출원 건수	~'70(%)	~'80(%)	~'90(%)	~'00(%)	'01~(%)	1998. 3.1~ (%)
B100	기타 의복 (우의, 예복)	76	3 (3)	2 (2)	25 (33)	27 (36)	19 (26)	33 (44)
B101	보온의 (방한복)	4	0 (0)	0 (0)	2 (50)	2 (50)	0 (0)	2 (50)
B110-1	양복 및 한복	17	1 (5)	0 (0)	11 (65)	5 (30)	0 (0)	11 (65)
B110A	한복	164	0 (0)	0 (0)	0 (0)	142 (87)	22 (13)	145 (88)
B1110	외의 또는 상의 (코트, 교복, 윈피스, 드레스, 모피코트)	75	1 (1)	13 (17)	16 (21)	36 (49)	9 (12)	30 (40)
B1111	신사복 등(신사복, 자켓, 상의, 교복상의)	54	0 (0)	5 (9)	6 (11)	20 (38)	23 (42)	27 (50)
B1112	와이셔츠 등(와이셔츠, 블라우스, 셔츠)	69	3 (4)	5 (7)	9 (13)	42 (61)	10 (15)	33 (48)
B1113	스웨터 폴로셔츠 등(스웨터, 폴로셔츠, 티셔츠, 운동용상의, 작업용상의)	225	0 (0)	34 (15)	33 (14)	77 (34)	81 (37)	110 (49)
B1114	양복조끼 (작업용조끼, 보온조끼)	62	1 (1)	10 (16)	9 (14)	23 (38)	19 (31)	35 (56)
B1115	잠바 등(자켓, 운동상의, 작업자켓)	121	2 (1)	8 (6)	20 (17)	41 (34)	50 (42)	61 (50)
B1116	망토(망토, 쇼울)	15	0 (0)	0 (0)	6 (40)	7 (47)	2 (13)	5 (33)
B1121	바지(청바지, 승마바지, 골프바지)	170	1 (0)	12 (7)	38 (22)	57 (34)	62 (37)	100 (59)
B1122	스커트(임산부용,	55	8 (14)	3 (5)	11 (21)	30 (55)	3 (5)	8 (15)
B113	연결복(작업복)	9	0 (0)	2 (22)	5 (56)	2 (22)	0 (0)	2 (22)
B121	일본/중국옷	2	0 (0)	0 (0)	2 (0)	0 (0)	0 (0)	0 (0)
B130	유아용티셔츠	16	0 (0)	0 (0)	4 (26)	6 (37)	6 (37)	7 (44)
B131	앞치마	41	4 (10)	0 (0)	12 (29)	11 (27)	14 (34)	15 (37)
B141	잠옷	10	0 (0)	10 (34)	0 (0)	0 (0)	19 (66)	0 (0)
B142	포대기	37	0 (0)	3 (10)	12 (40)	15 (50)	0 (0)	12 (32)
B15	수영복	38	0 (0)	0 (0)	22 (57)	10 (26)	7 (17)	16 (42)
B161	브래지어	62	0 (0)	0 (0)	0 (0)	34 (55)	28 (45)	46 (74)
B162	언더셔츠	40	0 (0)	4 (10)	2 (5)	10 (25)	24 (60)	30 (75)
B163	슬립	7	0 (0)	0 (0)	0 (0)	7 (100)	0 (0)	7 (88)
B164	패티코트 등 (요대)	2	0 (0)	0 (0)	0 (0)	2 (100)	0 (0)	0 (0)
B165	코르셋등 (팬티형)	75	0 (0)	4 (5)	0 (0)	39 (52)	32 (43)	58 (76)
B166	팬츠 (언더팬츠)	217	0 (0)	12 (5)	14 (6)	93 (43)	98 (46)	136 (63)
B167	스타킹	79	0 (0)	10 (12)	27 (34)	14 (18)	28 (36)	38 (48)
B170	생리대	16	4 (25)	3 (18)	2 (12)	5 (32)	2 (13)	4 (25)
B180	기저귀	50	0 (0)	4 (8)	11 (22)	29 (58)	6 (12)	24 (48)
B181	기저귀카바	12	0 (0)	1 (8)	1 (8)	5 (42)	5 (42)	3 (25)
B190	옷카바	30	4 (13)	1 (3)	2 (6)	19 (64)	4 (14)	8 (27)
	계	1,850	32 (1.7)	146 (7.6)	302 (16.4)	800 (43.3)	573 (30.9)	1006 (54.3)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공보(1963-2003.4.)

위해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심사제도이후의 2003년 4월 24일까지 약 6년간의 의장 출원비중을 분석하여 <표 2>의 마지막 행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무심사제도 시행 이후 약 6년간의 출원비중이 54.3%로 그 이전 30년간의 기간에 비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복류와 속옷류(브래지어, 언더셔

츠, 슬립, 코르셋, 언더팬츠)의 경우 평균비중인 54.3%를 훨씬 초과하여 이들 품목류의 경우 모두 60%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그러므로 의복류의 무심사제도 시행은 등록절차의 간소화와 등록기간의 단축으로 의장등록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또한 지난 몇 년간 디자인, 즉 의장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하고 그 권리를 보

<표 3> 심미성과 기능성 속성의 의장의 예

심미성	출원인: 질경이 분류코드: B110 출원번호: 30-1998-0018733 출원일자: 1998.10.30 등록번호: 30-0234947-0000 등록일: 1998.12.24	출원인: 한섬 분류코드: B1111 출원번호: 30-02512270000 출원일자: 1999.4.16 등록번호: 30-1999-0007956 등록일: 1999.11.12	출원인: 지.브이 분류코드: B1121 출원번호: 의1998-012674 출원일자: 1998.7.27 등록번호: 의0234940(M01) 등록일: 1998.12. 24	출원인: 리바이스트라우스 분류코드: B1121 출원번호: 30-1999-0029796 출원일자: 1999.12.09 등록번호: 30-02602610000 등록일: 2000.05.15
		 <의장내용> 자켓 상단에 착탈가능한 모자가 부착되어 있음.	 <의장내용> 솔기를 앞쪽으로 내어 봉제함으로써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유도한 특징	 “엔지니어드진
기능성	출원인: 신영와코부 분류코드: B165 출원번호: 30-2001-0007820 출원일자: 2001.03.28 등록번호: 30-02802650000 등록일: 2001.07.05	출원인: 강점오 분류코드: B1111 출원번호: 30-2001-0021249 출원일자: 2001.07.31 등록번호: 30-02889110000 등록일: 2001.12.19	출원인: 월드프로모션 분류코드: B1113 출원번호: 30-2001-0024792 출원일자: 2001.09.03 등록번호: 30-03001700000 등록일: 2002.05.30	출원인: 제일모직 분류코드: B1112 출원번호: 30-1999-0008232 출원일자: 1999.04.20 등록번호: 30-02434300000 등록일: 1999.06.17
				
기타성	출원인: SK상사 분류코드: B1121 출원번호: 30-1998-0010538 출원일자: 1998.06.25 등록번호: 30-02304920000 등록일: 1998.10.27	출원인: 문희숙 분류코드: B15 출원번호: 의1998-001239 출원일자: 1998.2.4 등록번호: 의0228061 등록일: 1998.9.23	출원인: 라이너퀘플러 분류코드: B1115 출원번호: 30-2001-0034213 출원일자: 2001.12.05 등록번호: 30-02987480000 등록일: 2002.5.13	출원인: 아프리카 가세이 분류코드: B1111 출원번호: 30-2002-0033968 출원일자: 2002.11.27 등록번호: 30-03182260000 등록일: 2003.02.04
	 <의장내용> 휴대전화기를 수납하기에 적합한 주머니가 있는 바지	 <의장의 내용>(아랫부분이 지퍼로 분리되는 수영복)	 <의장내용> 앞 뒤 구분없이 입을 수 있는 운동복 상의	 <의장내용> 아기를 안을 수 있는 띠가 장착된 자켓)

*의장정보에는 6면도가 제공되나 본 <표 3>에는 정면도만을 제공하였음.

**<의장내용>은 의장정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공하였음.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정보(1963-2003.4.)

호하고자 하는 의류기업의 인식변화에 의해 이 기간의 의장등록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복류와 속옷류에서 무심사제도 시행 이후 다른 제품류에 비해 의장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속옷의 패션화경향과 함께 속옷에 대한 관심이 증가와 한복의 예복화와 생활한복 시장의 등장으로 이들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5. 의복류의 품목별 의장의 속성분석

의복류의 의장등록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무심

사제도 시행 이후의 출원의장 총 1,006건에 대하여 의장의 속성을 심미성, 기능성,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사립기관의 표장으로 나누어 품목별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심미성에 의한 의장에는 한복치마의 밑단과 저고리 부리의 꽃문양, 티셔츠의 앞가슴부분의 문양, 청바지의 옆솔기를 앞쪽으로 이동시킨 디자인, 리바이스의 엔지니어드진 등이 포함되었다(표3). 둘째 기능성을 주는 의장은 입체적 패턴의 변형에 의한 의장, 예를 들면 휴대폰을 위한 주머니가 있는 바지, 수영복의 밑부분이 지퍼로 분리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되었다<표 3>. 유니폼으로서의 의장은 대한

<표 4> 표장을 위한 의장의 예

<p>출원인: 대한민국경찰청 분류코드: B1110 출원번호: 30-2000-0007087 출원일자: 2000.03.21 등록번호: 30-02656170000 등록일자: 2000.08.29 (기동대경찰복)</p>	<p>출원인: 수원시 분류코드: B110A 출원번호: 30-2001-0001107 출원일자: 2001.01.16 등록번호: 30-2000-0014832 등록일자: 2000.06.07 (담호)</p>	<p>출원인: 삼성서울병원 분류코드: B1112 출원번호: 30-2001-0001107 출원일자: 2001.01.16 등록번호: 30-02756600000 등록일자: 2001.03.26 (의사/간호사유니폼)</p>
<p>도민대용 경관사진</p> 	<p>도민대용 경관사진</p> 	
<p>출원인: 나이키스포츠 분류코드: B1121 출원번호: 30-2002-0021409 출원일자: 2002.07.25 등록번호: 30-03136800000 등록일: 2002.11.29 (월드컵유니폼)</p>	<p>출원인: 아디다스 분류코드: B1115 출원번호: 30-2002-0001511 출원일자: 2002.01.16 등록번호: 30-03000140000 등록일: 2002.05.24 (월드컵유니폼)</p>	<p>출원인: 아시아나항공 분류코드: B1122 출원번호: 30-2001-0011348 출원일자: 2001.04.30 등록번호: 30-02857300000 등록일: 2001.10.25 (창작자:진태욱)</p>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공보(1963-2003.4.)

<표 5> 품목별 의장의 속성분석

분류	설 명	무심사 재도후	기능(%)	심미성(%)	표장/ 유니폼 (%)	특이사항
B100	기타 의복 (우의, 예복)	33	16 (48)	17 (52)	.	언으로 변형가능한 우의
B101	보온의 (방한복)	2	2 (100)	..		귀마개/마스크부착 방한복
B110	양복 및 한복	11	. (0)	11 (100)		생활한복
B110A	한복	145	2 (1)	141 (98)	2 (1)	수원시(2), 한복 깃/소매 문양, 동일인 최대 91건 등록
B1110	외의 또는 상의 (코트, 교복, 윈피스, 드레스, 모피코트)	30	11 (37)	14 (46)	5 (17)	경찰청(2), 유니폼/교복(3), 텐트변형 가능한 자켓
B1111	신사복 등(신사복, 자켓, 상의, 교복상의)	27	14 (52)	9 (33)	4 (15)	교복(3), 학원(1), 한섬(2)
B1112	와이셔츠 등(와이셔츠, 블라우스, 셔츠)	33	3 (9)	10 (30)	20 (61)	교복, 자석부착셔츠, 예복
B1113	스웨터 폴로셔츠 등(스웨터, 폴로셔츠, 티셔츠, 운동용상의, 작업용상의)	110	18 (16)	79 (72)	3 (12)	수원시, 파주시, 장성읍, 영월군, 아디다스, 나이키의 월드컵유니폼
B1114	양복조끼 (작업용조끼, 보온조끼)	35	15 (43)	18 (51)	2 (6)	수원시의 미화원유니폼, 절연성내장 조끼, 냉온팩삽입조끼
B1115	잠바 등(자켓, 운동상의, 작업자켓)	61	6 (10)	43 (70)	12 (20)	수원시(2), 군인공제회(1), 월드컵유니폼(8)
B1116	망토(망토, 쇼울)	5	4 (80)	1 (20)	..	개폐부매직태이프부착
B1121	바지(청바지, 승마바지, 골프바지)	94	15 (16)	70 (74)	9 (10)	경찰청(1), 수원시(1), 아시안게임, 올림픽 유니폼
B1122	스키트(임산부용,	8	..	7 (87.5)	1 (12.5)	아시안유니폼
B113	연결복(작업복)	2	2 (100)	
B121	일본/중국옷	
B130	유아용턱받이	7	5 (71)	2 (29)	..	포켓부착턱받이
B131	앞치마	15	6 (40)	9 (60)	..	상하의분리에이프런, 단청모양
B141	잠옷	
B142	포대기	12	12 (100)	아기와 마주보는 포대기
B15	수영복	16	9 (56)	7 (44)	..	부력재삽입수영복, 축구공문양수영복
B161	브래지어	46	15 (33)	31 (67)	..	신영와코루(1), 유두돌출브래지어
B162	언더셔츠	30	16 (53)	14 (47)	..	뒷판이 긴 남성내의
B163	슬립	7	4 (57)	3 (43)	..	브래지어부착슬립
B164	페티코트 등 (요대)	
B165	코르셋등 (팬티형)	58	14 (25)	44 (75)	..	신영와코루(4), 남성용거들
B166	팬츠 (언더팬츠)	136	94 (69)	42 (31)	..	신영와코루(2), 자석팬터, 맥반석팬터
B167	스타킹	38	12 (31)	26 (68)	..	자카드스타킹, 팬티부분통폼스타킹
B170	생리대	4	4 (100)	
B180	기저귀	24	24 (100)	P&G(9), 킴벌리(10), 유니참(4), 삼성서울병원(1), 성인용기저귀
B181	기저귀카바	3	3 (100)	P&G(2)
B190	옷카바	8	8 (100)	P&G(2), 킴벌리(1)
		1,006	342 (33.9)	598 (59.3)	68 (6.8)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공보(1963-2003.4.)

민국경찰청에 의한 방한복, 수원시의 답호와 환경미화원 유니폼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것과 삼성서울병원, 아시아나항공 등의 기업 유니폼, 또는 월드컵 등의

특별한 행사를 위한 디자인 등이 포함되었다<표 4>. 분석결과 심미성을 위한 의장이 약 60 %, 기능성을 위한 의장이 34 %, 그리고 표장 또는 유니폼이 6

%순으로 심미성을 위한 디자인이 의장 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표 5>). 그러나 품목별로 의장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차이를 보여 보은의 (B101), 연결복(B113), 포대기(B142), 그리고 생리대 기저귀등(B170-B190)의 경우 모두 기능성을 위한 의장이었고 기타의복(B100), 신사복 등(B111), 망토(B116), 유아용턱받이(B130), 수영복(B15), 언더셔츠(B162), 슬립등(B163)의 경우 기능성을 위한 의장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한복류(B110A), 잠바(B1115), 바지(B1121), 스커트(B1122), 브래지어(B161), 코르셋(B165), 스타킹(B167)의 품목은 심미성을 위한 의장이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표장(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상징 또는 유니폼) 또는 특별행사를 위한 유니폼은 일부 품목에 집중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와이셔츠 등에 교복의 의장이 20건, 스웨터, 폴로셔츠 등에 공공기관의 표장 및 월드컵등의 유니폼이 13건, 잠바 등에 12건, 바지류에 경찰청, 수원시등의 유니폼이 9건, 그리고 한복에 수원시의 철릭, 담호의 2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표장으로서의 의장등록은 공공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모방 경찰복착용으로 인한 사칭 등의 범죄³⁰⁾ 예방 역할도 할 수 있다.

<표 5> 상표를 모방한 의장등록의 예

원상표	상품분류코드: 25 출원번호: 40-2000-0034070 출원일자: 2000.07.14 공고번호: 40-2002-0013363 공고일자: 2002.04.06 출원인: 야키라엘 엘 씨	상품분류코드: 25 출원번호: 50-1999-0005628 출원일자: 1999.07.02 원등록번호: 40-00632150000 원등록일자: 1979.07.18 출원인: 카티어(Cartier)	상품분류코드: 045 출원번호: 40-1992-0011101 출원일자: 1992.04.21 등록번호: 40-03208920000 등록일자: 1995.08.25 출원인: 살바토레 페라가모
			
원상표의 유사 의장	의장분류: B1-113 출원번호: 30-2001-0008762 출원일자: 2001.04.04 등록번호: 30-0279309(24) 등록일자: 2001.6.20 출원인: 태원일	의장분류: B1113 출원번호: 30-1999-0026571 출원일자: 1999.11.05 등록번호: 30-02559770000 등록일자: 2000.2.17 출원인: 마리오	의장분류: B1113 출원번호: 30-2001-0006158 출원일자: 2001.03.15 등록번호: 30-02761980000 등록일자: 2001.04.09 출원인: 배춘자
			

*자료출처: 특허청, 공개의장공보(1963-2003.4.)

6. 무심사제도에 의한 문제로서 모방상표에 의한 의장의 중복등록

무심사제도 시행이후의 등록의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무심사등록 제도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심사제도를 이용해 타인의 저명한 등록 도형상표(로고)를 의도적으로 모방해 의복류의 의장을 등록해 놓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Cartier의 등록 도형상표를 모방한 니트조끼, Ferragamo의 도형상표를 모방한 티셔츠, 그리고 미국 ECKO의 코뿔소 도형상표를 모방한 티셔츠 등은 해외저명 상표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사례로 분석된다. 이들 의장 등록의 시기는 모두 무심사제도 시행이후이며 모두 상표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례이다. 아직 건수로는 많지 않으나 현재와 같은 무심사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이러한 사례는 증가할 것이며 모방의 대상이 <표 5>와 같은 해외상표 뿐만아니라 국내상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제도에서는 상품외관의 창작성과 신규성이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을 때 의장법과 상표법에 의한 병행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³¹⁾ 그러나 의장등록 출원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저명 상표권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상표출원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저명 의장권에 저촉되는 경우 등록 자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의장법 6조 3항, 상표법 7조 1항 10호).³²⁾ 그런데 무심사제도로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도형상표를 모방한 의장은 원상표에 의한 디자인으로 오인될 수 있고 등록이 된 의장에 의한 제품은 결국 합법적인 위조상품이 될 수 있다. 이는 정해성의 연구³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심사제도의 심사요건이 좀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유명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는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현재 의복류에 등록된 의장을 품목별 출원인, 연

도, 그리고 속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의장등록은 일부 세부품목에 편중되어 스웨터/폴로셔츠류(B1113), 언더팬츠(B166), 바지(B1121), 한복(B110A), 그리고 잠바류(B1115)의 상위 5개 품목에 총 의장의 48.5%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품목은 비교적 상품수명이 긴 품목으로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록절차 이후에도 제품의 디자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이며 또한 한복은 디자인의 변화요소 중 소재의 색이나 패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디자인의 유사성판단이 다른 제품류에 비하면 용이하다는 점도 등록의 동기유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속옷 및 한복에 대한 부가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품목에 따른 출원인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보다는 개인출원인의 비중이 커 전체의 71.7%로 더 많았고 특히 우의, 예복(B100), 전통한복(B110A), 와이셔츠 등(B1112), 스웨터/폴로셔츠류(B1113), 앞치마(B131), 브래지어(B161), 언더팬츠(B166), 스타킹(B167)에 있어 개인출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고 코트, 교복 등의 외의 상의(B1110), 신사복 자켓(B1111), 양복조끼(B1114), 잠바 등(B1115), 스커트(B1122), 수영복(B15), 코르셋(B165) 등의 품목에서는 기업의 출원비중이 높았다. 이는 개인창작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장등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은 제품의 디자인 이외 마케팅력이나 브랜드 힘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므로 투자가 작은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김동명³⁴⁾의 지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1998년 3월 1일이행된 의복류 무심사등록제가 의장등록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약 6년간의 등록이 전체의 54.3%를 차지해 절차의 간소화와 무심사, 그리고 출원기간의 단축이 의장등록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의장의 속성을 심미성, 기능성, 그리고 표장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심미성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일부 품목에는 기능성 또는 표장의 비중이 컸다. 예를 들면 기타의복, 신사복 등(B1111), 망토, 유아용턱받이, 수영복, 언더셔츠, 슬립에는 기능성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고 표장은 와이셔츠류, 스웨터,

폴로셔츠등, 잠바등, 바지류, 그리고 한복에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유니폼이 집중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5) 현행 무심사 의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의장과 상표의 중복보호가 분석되었고 특히 의도적으로 해외 저명 도형상표를 모방한 의장이 발견되어 이는 무심사제도의 최소한의 심사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의복류의 의장제도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의장출원이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류산업에 맞는 의장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의류제품의 디자인의 법적 보호제도인 의장법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좀 더 실제 패션업계의 디자이너들이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장제도에 관하여 패션업계와 관련디자이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업계의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해보면 의장법제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실사 제도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내용이나 시행세칙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의장공보 자체의 존재도 거의 모른다. 그러므로 패션기업의 상품개발자 또는 디자이너가 신상품개발자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의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의장공보를 열람하여 검색하는 방법 및 습관도 필요할 것이며 디자이너가 직접 인터넷으로 의장출원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의류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특히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패션산업에는 디자인모방에 대하여 서로 모방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여겨지는 편이다. 또한 패션산업에서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기보다는 단지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여기며 적당한 변형은 새로운 제품개발의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보호제도 정비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본요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이나 점차 유행주기가 짧아지는 패션상품에는 3개월도 길게 느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류에는 그 기간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복류의 의장등록 추이와 등록 의장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행의장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후 의복류 의장제도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여, 그 대상을 패션제품 중에서도 의복류(의장분류 B1)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는 가방류나 신발류 등을 포함한 패션제품에 관한 연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허청의 의장등록 자료만을 이용하였으나 의장등록을 한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의장등록 동기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도 실효성있는 의장제도 정비에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상정 (1995). 의장의 보호방법에 관한 일고. 창작과 권리 (겨울호), pp. 96-118.
- 2) 최병규 (1997). 판례를 통한 의장법연구. 창작과 권리, 1권, pp. 27-52.
- 3) 동아일보 (1996. 7. 8). 디자이너 기업운명 좌우, p. 11.
- 4) 이상정 (1998). 개량 의장법상의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 창작과 권리, 10권, pp. 96-118.
- 5) 이한상 (2000). 21세기 의장의 중요성에 따른 개념정립 및 해석론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9호, pp. 195-214.
- 6) 섬유산업연합회 (1997). 지적재산권제도와 우리의 대책, 97 섬유패션연감, pp. 2763-2768.
- 7) 김용주 (2001). 한국 패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2), pp. 5-21.
- 8) 한국섬유경제신문 (2002. 8. 28). 카피논쟁 패션업계 '용광로' -오리지널리티 입증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경고할 수 없다.
- 9) 국민일보 (2002. 8. 11). '히딩크넥타이' 법정으로.
- 10) 의장공보책자에 수록되었고 의장등록번호는 30-00015380000이다.
- 11) 특허청의 정보검색시스템인 KIPRIS으로 2003. 4. 30일 검색에 의한 자료이다.
- 12) 한국섬유경제신문 (2003. 3. 19). 지식경영 핵심 IPROI 해 절실, p. 23.
- 13) 신재호 (2001). 개정 의장법 검토. 창작과 권리, 22권, pp. 52-65.
- 14) 김용주 (2001). 앞의 글.

- 15) 두산세계대백과사전(2003). 자료검색일 2003. 5. 10,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16) 이한상 (2000). 앞의 글.
- 17) 신수희 (2001). 의장개념의 재정립 및 의장법상 보호범위의 확대. 창작과 권리, 24권, pp. 30-43.
- 18) 우종균 (2003). 의장법 개정내용. 의장법 개정공청회 (2003. 7. 23). 특허청, pp. 7-28.
- 19) 의장법 제 1장 2조.
- 20) 실제로 축구공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자 강점오는 원피스, 티셔츠, 점퍼, 언더팬츠 등 총 202건의 의장을 등록하고 있다.
- 21) 의장등록 제 228306호 무효심판, 1999. 10. 19.
- 22) 의장법 제 2장 제 5조.
- 23) 의장법 제6조.
- 24) 이상정 (1998). 앞의 글.
- 25) 특허분쟁 (2002. 12. 9). 무심사 의장등록 '분쟁불씨'.
- 26) 조철현 (1997. 4. 20). 특허와 분쟁. 제 425호, p. 11.
- 27) 이상정 (1998). 앞의 글.
- 28) 2001. 2. 3.에 개정된 의장법에 준한다.
- 29) 김동명 (2002. 7). 디자인의 권리와 보호. YOU ME News 42호. 유미특허법인. 자료검색일 2003. 4. 23. 자료출처 <http://www.youme.com>
- 30) 동아일보 (2003. 5. 9). 3일만에 막내린 가짜 경찰행세.
- 31) 임현지 (1999). Trade Dress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상품외관의 상표법상 보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이우권 (1997). 논문 6 : 의장권,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타인의 저명한 표지와 의 저촉문제에 대한 고찰. 산업재산권, 5권, pp. 120-131.
- 33) 정해성 (1998). 의장보호의 정도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 창간호. pp. 5-28.
- 34) 김동명 (2002). 앞의 글.